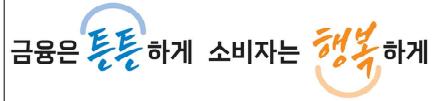


 금융감독원	보 도 참 고	 금융은 투투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						
보도	2023.1.17.(화) 조간	배포						
2023.1.16.(월)								
담당부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연금감독실</td><td style="width: 33%;">책임자</td><td style="width: 33%;">팀 장</td></tr> <tr> <td>연금감독팀</td><td>담당자</td><td>손인수 (02-3145-5190) 선임조사역 김동식 (02-3145-5193)</td></tr> </table>	연금감독실	책임자	팀 장	연금감독팀	담당자	손인수 (02-3145-5190) 선임조사역 김동식 (02-3145-5193)	
연금감독실	책임자	팀 장						
연금감독팀	담당자	손인수 (02-3145-5190) 선임조사역 김동식 (02-3145-5193)						
[금융꿀팁 200선] <140>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								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- 동시에 ‘16.9.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140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 “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 핵심포인트>

-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,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.
-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,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.
-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, 자신의 투자 성향·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 되지 않으므로,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(국세청 “연금 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”)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.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-⑩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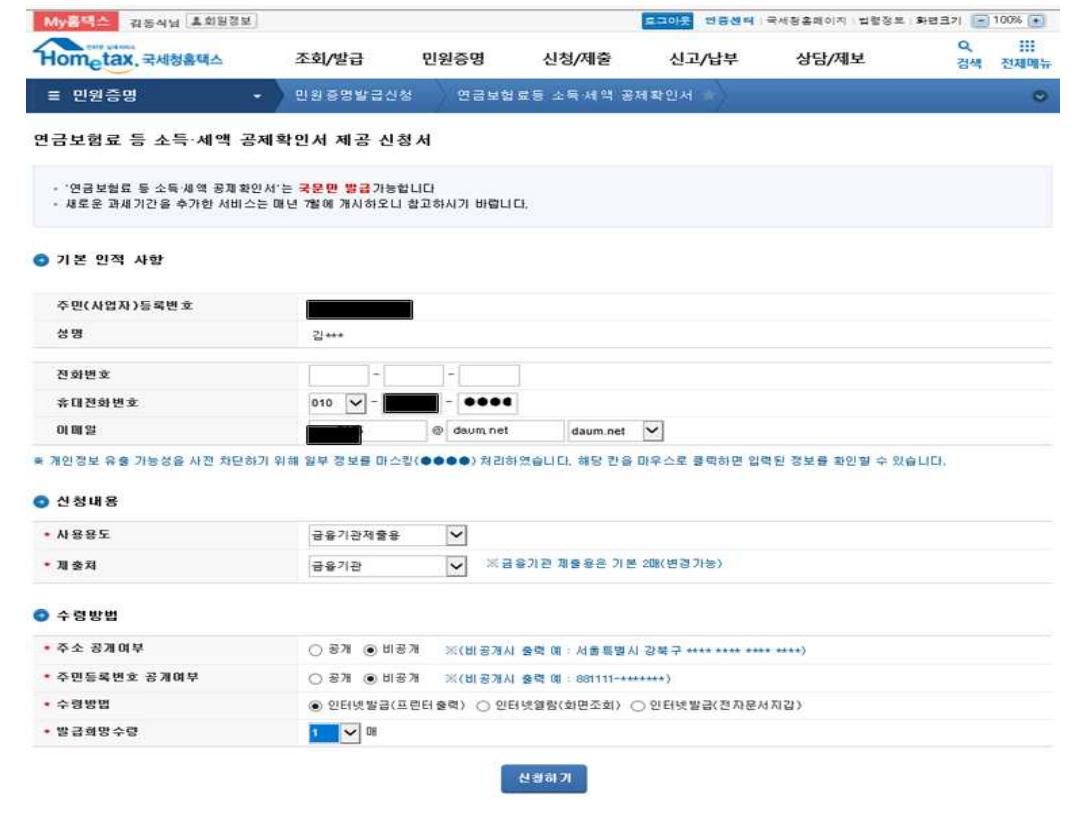
금융꿀팁 200선 - ⑯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사례 및 꿀 팁	<p>■ (사례1)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(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)과 '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(연간 1,440만원) 받도록 계획 하였는데,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</p> <p>❶ 연간 연금수령액을 1,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.</p> <p>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(6.6%~49.5%) 또는 ②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*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'23.1.1.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, '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(6.6%~49.5%)</p> <p>다만,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, 연간 연금수령액*이 1,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(1,200만원 초과액이 아님)에 대해 16.5%, 1,200만원 이하이면 3.3%~5.5%로, 1,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.</p> <p>*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,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, '00.12월 이전 가입한 (구)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퇴직연금(본인추가납입액)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,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</p> <p>따라서,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%~5.5%)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.</p>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례 및 꿀팁	<p>■ (사례2)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,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</p> <p>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,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.</p> <p>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, 연금수령시 나이*가 55세 이상~70세 미만이면 5.5%, 70세 이상~80세 미만이면 4.4%, 80세 이상이면 3.3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.</p> <p>*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※ (종신연금 연금소득세) 55세 이상~80세 미만 : 4.4%, 80세 이상 3.3%</p> <p>예를 들어,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,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.5만원인 반면,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,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.5만원(=522.5만원-440만원)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(사례)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12.5만원 (500만원×15년×5.5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0만원 (500만원×5년×4.4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= 522.5만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5% 4.4%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82.5만원 절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령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5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5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5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5% 4.4% 3.3%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7.5만원 (500만원×5년×5.5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0만원 (500만원×10년×4.4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2.5만원 (500만원×5년×3.3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= 440만원</td> </tr> </table> <p>따라서,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,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</p>	412.5만원 (500만원×15년×5.5%)	+	110만원 (500만원×5년×4.4%)	= 522.5만원	5.5% 4.4%			82.5만원 절세	연령				55세	60세	65세	70세	75세	80세	85세	5.5% 4.4% 3.3%							137.5만원 (500만원×5년×5.5%)		+	220만원 (500만원×10년×4.4%)		+	82.5만원 (500만원×5년×3.3%)	= 440만원
412.5만원 (500만원×15년×5.5%)	+	110만원 (500만원×5년×4.4%)	= 522.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5% 4.4%			82.5만원 절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5세	60세	65세	70세	75세	80세	85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5% 4.4% 3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7.5만원 (500만원×5년×5.5%)		+	220만원 (500만원×10년×4.4%)		+	82.5만원 (500만원×5년×3.3%)	= 44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																
<p>사례 및 꿀 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사례3) 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 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, 어떤 것으로 체결 해야 하는지 고민 중 <p>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, 자신의 투자 성향·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/p> <p>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,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</p> <p>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, 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</p> <p>※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,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</p> <p>아울러,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총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*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,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자변경 불가</p> <p>※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, 확정연금,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, 신탁계약은 정기연금(기간지정형, 금액지정형),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됨</p> <p>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,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, 자신의 투자 성향·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*할 필요가 있습니다.</p> <p>*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, 신탁계약은 은행·증권사·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연금지급방식 비교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colspan="2">보험계약</th> <th colspan="2">신탁계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종신 연금</td> <td>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</td> <td>정기 연금</td> <td>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</td> </tr> <tr> <td>확정 연금</td> <td>5년,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</td> <td>금 액 지정형</td> <td>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</td> </tr> <tr> <td>상속 연금</td> <td>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·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 보험금·해약환급금으로 지급</td> <td>비정기 연 금</td> <td>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험계약		신탁계약		종신 연금	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	정기 연금	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	확정 연금	5년,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	금 액 지정형	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	상속 연금	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·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 보험금·해약환급금으로 지급	비정기 연 금	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
보험계약		신탁계약															
종신 연금	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	정기 연금	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														
확정 연금	5년,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	금 액 지정형	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														
상속 연금	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·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 보험금·해약환급금으로 지급	비정기 연 금	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														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사례 및 꿀팁	<p>■ (사례4) D씨는 A,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,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,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함</p> <p>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,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(국세청 “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”)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.</p> <p>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)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,800만원인 반면,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*에 불과하므로,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,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</p> <p>* 연간 700만원(연금저축 300~400만원 포함)을 한도로 16.5%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또는 13.2%(총급여 5,500만원 초과) 세액공제 ※ '23.1.1.부터는 연간 900만원(연금저축 600만원 포함)을 한도로 세액공제</p> <p>다만,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(원천징수의무자)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,</p> <p>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“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”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,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</p>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사례 및 꿀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“홈택스”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 ></p> <p>1. 국세청(홈택스) 홈페이지 < 민원증명 <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</p>  <p>2. 기본 인적사항, 신청내용, 수령방법 선택 후 “신청하기” 버튼 클릭</p> 

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·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,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